

2026년 ICCE X INNOPOLIS 창업스쿨 16기 모집 공고

「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,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, INU PARTNERS」

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『2026년 ICCE X INNOPOLIS 창업스쿨 16기』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4월 8일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I 교육개요

□ 목적

- (예비)창업자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구체화하여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반 마련

□ 프로그램 구성 :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그룹 멘토링, 네트워킹

□ 프로그램 운영일정

개강식 5. 9.(토)	▶	교육운영 (오프라인) 5. 16.(토) ~ 5. 30.(토)	▶	데모데이 및 수료식 6. 13.(토)
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*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운영일시 : 2026. 5. 9(토) ~ 6. 13.(토) / 매주 토요일, 총 5회(현충일 휴강)
- 운영시간 : 토요일 종일제 교육 ※ 상세 운영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
- 운영장소 :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(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7F)

□ 강의 커리큘럼

일정	교육 구분	내용
1회차 (5/9)	개강식	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
	특강	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부지원 사업 지원 시 활용 범위
	필수교육	정부지원 사업 공고문 분석과 사업계획서 PSST 항목별 구조
2회차 (5/16)	필수교육	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법
	그룹 멘토링	사업계획서 초안 작성
3회차 (5/23)	필수교육	설득력 높이는 사업계획서(수익전략 구체화)
	그룹 멘토링	사업계획서 작성
4회차 (5/30)	필수교육	투자 메커니즘
	그룹 멘토링	사업계획서 고도화
5회차 (6/13)	수료식	수료증 전달
	데모데이	사업계획서 발표평가, 데모데이 시상 및 우수교육생 선발

II 신청자격

□ 신청대상 :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창업자
- 7년 이내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

*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
* [붙임]의 '창업 여부 기준표' 참고

□ 신청제외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- ICCE 창업스쿨 1기~15기 선정자(기업) 중, 데모데이 수상자(기업)
- ICCE 창업스쿨 1기~15기 선정자(기업) 중에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신청한 경우
-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
□ 모집분야 : 기술 제조 및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등 전분야

- 도소매, 유통, 요식업 등 소상공인창업분야 제외
- 12대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은 선정 시 가점부여

구분	세부분야
12대국가전략기술	반도체 ·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첨단모빌리티, 차세대 원자력, 첨단바이오, 우주항공 · 해양, 수소, 사이보 보안, 인공지능, 차세대 통신, 첨단로봇 · 제조, 양자
탄소중립기술	클린테크, 카본테크, 에코테크, 푸드테크, 지오테크

□ 모집인원 : 20명 내외

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4. 8.(수) ~ 4. 24.(금) 12:00까지
- 신청방법 : 인천창업플랫폼 홈페이지 내 서류 제출
 -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: 신청서 양식은 인천창업플랫폼 창업스쿨 신청 홈페이지 참조
 - 공통 : 수강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
 - 창업기업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

* 기타 자격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추후 데모데이 입상자에 한하여 제출
 * 요건검토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

Ⅳ 선정방법

□ 선발심사

- 교육생 선발 심사를 통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
 -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창업 의지, 사업 타당성 및 실현성 등에 대해 서류 평가 실시
-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POOL을 활용하여 공정한 심사 운영
 - 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인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결과통보

□ 평가항목

구분	세부지표	평가배점
기대 성과	창업 의지 및 발전 가능성	20
창업 역량	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	20
사업화 가능성	시장 분석, 사업화 계획	30
비즈니스모델 경쟁력	차별성, 경쟁력, 비즈니스모델	30
합 계		100

□ 평가일정: 2026. 4. 27.(월) ~ 4. 29.(수)

□ 결과안내: 2026. 4. 30.(금) 예정

- 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인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결과통보

Ⅴ 지원내용

□ 지원사항

- 교육비 전액 무료
- 데모데이 입상 우수교육생 3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* 추천
 - *보육기업 혜택 : 입주공간 지원, 투자기업 검토, 전문멘토링 지원 등
- 데모데이 입상 우수교육생 중 ESG 분야 대상 사업화 자금(10,000천원) 지원

Ⅵ 유의사항

□ 수료기준

- 전체 교육(5회) 중 80% 이상(4회 이상) 출석 시 수료 가능
- 데모데이 필수 참석(미참석 시 수료 불가)

Ⅶ 문의처

□ 담당자: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윤수정 매니저

□ 연락처: 032-458-5023

붙임	창업 여부 기준표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 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동종창업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"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"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제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전'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